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2월 2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심**	심** 1985-03-26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	무단전출
심**	김** 1962-02-13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	무단전출
심**	심** 1987-03-14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	무단전출
심**	심** 2015-03-21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69-10-29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11번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최 준 경 문의전화 : 032-560-3261)

2016년 02월 22일

검단1동장

